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5.

발 의 자 : 김대식 · 김문수 · 김선교
김기현 · 성일중 · 김태규
이주영 · 김상훈 · 윤한홍
김예지 · 유영하 · 김승수
안철수 · 윤영석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외국박사학위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, 교육부장관은 외국 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.

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·편입학 과정에서 제출하는 외국학력·학위 서류는 외국공문서에 대해 협약가입국 간 인증을 생략하는 ‘아포스티유’에 따라 학위의 진위 및 수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하고 있는데, 아포스티유는 학위 자체의 진실성이나 학력의 적법성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의 진위 및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위검증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협조 및 요청할 수 있

고, 교육부장관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입학·편입학과 관련된 대학의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의2 신설).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외국학력·학위검증 등) ①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교 학위의 진위(眞僞), 수준 검증 및 활용(이하 이 조에서 “외국학력·학위검증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은 학력·학위 검증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검증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검증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검증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국내외 고등교육제도 및 학력·학위 등 고등교육 자격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2. 외국 학력·학위 등 고등교육 자격의 국내 활용 및 진학자격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
3. 국내 학력·학위 등 고등교육 자격의 국외 통용 지원
4. 고등교육 자격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지원

④ 그 밖에 검증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5조의2(외국학력·학위검증 등) ①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교 학위의 진위(眞僞), 수준 검증 및 활용(이하 이 조에서 “외국학력·학위 검증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② 교육부장관은 학력·학위 검증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검증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검증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른 검증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 <u>1. 국내외 고등교육제도 및 학력·학위 등 고등교육 자격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</u>

2. 외국 학력·학위 등 고등교육 자격의 국내 활용 및 진학 자격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

3. 국내 학력·학위 등 고등교육 자격의 국외 통용 지원

4. 고등교육 자격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지원

④ 그 밖에 검증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